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삼성증권㈜

2. 제재조치일 : 2025. 5. 15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경영유의 2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신규출시 상품에 대한 심사 절차 강화

신상품의 판매 여부 결정 시, '상품위원회'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, 새로운 투자구조*의 상품이라도 투자대상자산·운용전략 등이 기존 상품과 유사하면 신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동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있는바,

* 예) 동일 펀드 내 하위 클래스를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형태 등

새로운 위험요소가 내재된 상품임에도 상품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출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신상품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.

신상품 검토 시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은 고려하고 있으나, 보수체계에 대한 점검 절차 미흡으로 비합리적 보수구조*의 상품이 판매된 사례가 있으므로,

* 예) 단순히 매입·보유하는 전략임에도, 연 3%의 운용보수와 펀드수익의 50%의 성과보수를 운용사에 지급

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절차를 강화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한 보수구조의 상품이 출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.

(2) 비정형 신탁상품 취급 시 통제절차 강화

투자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거나, 운용전략·보수구조 등이 비합리적인 신탁상품을 고객요청 등에 따라 설정하는 경우, 동 신탁거래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,

신탁의 구조 및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의심 거래 여부 등을 판단하고 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, 해당 신탁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